



삼척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220호 2022. 4. 8.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47호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48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 4
- 삼척시 고시 제49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 5
- 삼척시 고시 제50호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
- 삼척시 고시 제5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9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463호 삼척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2
- 삼척시 공고 제465호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7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홍보실 (전화 : 570-3229,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2 - 47호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4. 6.

삼척시장

- 고시일 : 2022. 4. 6. (수)
- 고시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 고시내용 :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 1건 (조서 및 위치도 참조)
- 도로명의 부여·변경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 의견 수렴한 날부터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10일 이내	14일 이상	30일 이내	주소정보위원회 개최	10일 이내

<변경의 경우>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공고한 날부터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서면 동의 받은 날부터 (서면 동의 생략 포함)	고시 및 신청인 통보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주소사용자의 1/2 미만)	서면 동의 만료일부터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심의 결과 · 변경 내용 및 절차	30일 이내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결과 통보

※ 도로명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 변경 및 폐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사용할 수 없음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주소정보 위원회의 심의 등 서면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 지적정보부서(☎033-570-39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위치도

조서	구분	도로명	도로 위계	관할행정 구역	도로구간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변경 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 (m)				폭 (m)
	변경	사둔안길	길	미로면	사둔리 51-1	사둔리 147-0	479	5	20	70-1 → 70-48	1차종속구간 신설



위 치 도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등 서면 동의 절차 생략.

삼척시 고시 제2022 - 48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삼척시 시세 조례 제14조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6일

삼척시장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현황

지역별	면적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79,882,251.0	증) 578.4	79,882,829.4	
동지역 (미로면포함)	51,736,662.0	증) 578.4	51,737,240.4	
도계읍	8,031,000.0		8,031,000.0	
원덕읍 호산지역	9,196,536.0		9,196,536.0	
원덕읍 임원지역	2,109,602.0		2,109,602.0	
근덕면	8,026,423.0		8,026,423.0	
방재산업단지	782,028.0		782,028.0	

○ 적용일 : 2022. 6. 1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삼척시 고시 제2022-49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삼척시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4. 5.

삼척시장

(단위 : 백만원)

회계별	구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비고
					%	
합	계	751,561	611,121	140,440	22.98	
일	반 회 계	709,106	574,847	134,259	23.06	
특	별 회 계	42,455	36,274	6,181	17.04	
	기타 특별회계	16,258	12,578	3,680	29.26	
·	하수도사업	6,733	4,391	2,342	53.34	
·	주택사업	0.3	0.3	0	0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623	4,091	532	12.99	
·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지원사업	987	787	200	25.41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329	169	160	94.84	
·	의료급여기금	1,455	1,473	△18	△1.25	
·	자활기금운영	677	677	0	0	
·	주차장	979	514	465	90.51	
·	임대아파트관리운영	475	475	0	0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26,197	23,696	2,501	10.55	

삼척시 고시 제2022-50호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의 변경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8일

삼척시장

가. 계획취지

- 「국토계획법」 제24항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나.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0	8	국지 도로	304	중로1-5 덕산리 442-1도	소로3-20 교가리 361-3도	일반 도로		1994. 7. 1. (강원도고시 제117호)	
기정	소로	3	20	6	국지 도로	116	소로3-4 교가리 360-2대	소로2-20 교가리 361-3도	일반 도로		1994. 7. 1. (강원도고시 제117호)	
변경	소로	2	20	8~9	집산 도로	442	소로2-40 덕산리 442-1도	소로1-6 교가리 651-9대	일반 도로	덕산교		교가길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1	8	국지 도로	250	소로3-20 교가리 362대	소로2-26 교가리 361-48도	일반 도로		1988.11.12 (강원도고시 제131호)	
변경	소로	2	21	8	국지 도로	250	소로2-20 교가리 362대	소로2-26 교가리 361-48도	일반 도로			교가길
기정	소로	2	25	8	국지 도로	267	소로2-20 교가리 361-3도	소로2-19 교가리 1145-5도	일반 도로		1997.5.1. (강원도고시 제110호)	
변경	소로	2	25	8	국지 도로	267	소로2-20 교가리 361-3도	소로2-19 교가리 1145-5도	일반 도로			교가2길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365	중로1-1 교가리 1124-7도	소로2-25 교가리 1269도	일반 도로		1988.11.13. (삼척시고시 제131호)	
변경	소로	3	4	6	국지 도로	341	소로2-20 교가리 651-8대	소로2-25 교가리 1269도	일반 도로	교가리 느티 나무		교가1길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20 소로3-20	소로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로3-20 폭원·연장 확장(소로2류) 및 연결도로(소로2-20)에 합병 - 위치: 소로2-40 덕산리 442-1 ~ 소로1-6 교가리 651-9 - 폭원: 8~9m, 연장: 442m • 도로 기능별 구분 변경 : 국지도로 → 집산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통행이 빈번한 소로3-20호선의 협소한 폭원을 확장하고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위하여 같은 노선상 소로2-20호선과 합병 - 도로의 실질적인 기능을 감안하여 도로 기능분류 변경
소로2-21	소로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형 일부 변경 • 기점 표기 변경 - 위치: 소로2-20 교가리 362 ~ 소로2-26 교가리 361-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속하는 소로3-20호선 폭원 확장(소로2-20)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
소로2-25	소로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형 일부 변경 - 위치: 소로2-20 교가리 361-3 ~ 소로2-19 교가리 114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속하는 소로3-20호선 폭원 확장(소로2-20) 및 노선 합병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4	소로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축소 - 위치: 소로2-20 교가리 651-8 ~ 소로2-25 교가리 1269 - 연장: 365m → 341m(감 24m) 	- 소로2-20호선의 연장 확장 및 기능 구분(집산도로)에 따른 체계적 관리

다.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삼척시청 도시과 비치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 게재

라. 이 고시와 관계된 서류는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6)에 비치하며,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 고시 제2022 -5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4. 8.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721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44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3건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721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44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3건	20220408	가설건축물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활용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리 59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안길 70-19	20220408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 지역위치복합활용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기리 177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기길 706-128	20220408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삼척시 공고 제2022-463호

「삼척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8일
삼척시장

삼척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상위법(「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삼척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장직의 원활한 인수와 시정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2조 ~ 안 제3조)
- 다. 회의(안 제4조)
- 라. 위원회의 직원,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안 제5조 ~ 안 제6조)
- 마. 수당 및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안 제7조 ~ 안 제8조)
- 바. 운영세칙(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검토의견서를 2022년 4월 29일까지 삼척시장(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기획조정실(기획부서)
- 전화 : 033-570-3211
- FAX : 033-570-3131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 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광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삼척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삼척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삼척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삼척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삼척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견제출자 :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2-465호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2년 4월 8일

삼척시장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위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조정하여 경관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
 - 변경: 삼척시 경관 조례
- 나.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변경(안 제24조)
 - 대상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등 <별표>에 의거 규정
- 다.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확대(안 제25조)
 - 지상 10층 건축물과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신설)
- 라. 그 밖에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삼척시장(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의견(참고 사항 등)
- 라.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914)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도시과
 - 전 화 : 033 - 570 - 3874
 - 팩 스 : 033 - 570 - 3182
 - E-mail : dustnr1128@korea.kr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규칙)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광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4.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를 “삼척시 경관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안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경관계획 제안서”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수립을)”을 “(수립 또는 변경을)”로 하고,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 중에서”를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중 “경관계획”을 각각 “해당 경관계획”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경관사업계획서)”를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로 한다.

제16조 제1호 중 “가진 자”를 “가진 자로서 그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제19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경관협정운영회의”를 “경관협정운영회”로 한다.

제24조 제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시행 또는 승인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별표와 같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등에 따라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된 사업은 경관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5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별표”로 하고, 같은 조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된 사업은 경관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사람으로”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로 하고,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로, 제3항 중 “보궐위원의”를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로, “전임자의”를 “전임 위원”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삼척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삼척시 경관 조례」 제26조에 따라 삼척시 경관위원회

② 삼척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를 “「삼척시 경관 조례」”로, “경관형성심의위원회”를 “경관위원회”로 한다.

제3조(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물의 경관심의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별표]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제24조 및 제25조 관련)

구분	심의대상 및 규모		위원회
사회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6.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7.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8.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건축물	경관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지구의 건축물(아래의 건축물은 제외)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 경관지구내에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외장디자인 	경관위원회
	중점경관관리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공공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증축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단,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의 증축건축물은 제외) <개정 2018.12.14.>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 10층 이상 건축물<신설 2022. > ·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신설 202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u>제안서</u>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u>경관계획수립제안서</u> 가. ~ 다. (생략)</p> <p>2. ~ 5.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 ----- <u>별지 제1호 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u>에----- -----.</p> <p>1. <u>경관계획제안서</u> 가. ~ 다. (현행과 같음)</p> <p>2. ~ 5.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u>자 중에서</u>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p> <p>1. <u>경관계획과</u> 관련된 당사자</p> <p>2. <u>경관계획과</u>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p> <p>3. <u>경관계획과</u>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p> <p>② ~ ④ (생략)</p>	<p>제8조(경관계획의 <u>수립 또는 변경을</u> 위한 공청회) ① ----- ----- <u>사람 중에서</u>----- -----.</p> <p>1. <u>해당 경관계획</u>-----</p> <p>2. <u>해당 경관계획</u>----- -----</p> <p>3. <u>해당 경관계획</u>-----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u>경관사업계획서</u>) (생략)</p>	<p>제10조(<u>경관사업 사업계획서</u>) (현행과 같음)</p>
<p>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생략)</p> <p>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p>	<p>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현행과 같음)</p> <p>1. -----</p>

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생략)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의 설립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삼척시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30억원 이상인 (단, 용지보상비 제외) 사업을 말한다.

- 1. 삭제
- 2. 삭제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

제29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

-----가진 자로서 그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2. (현행과 같음)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 경관협정운
영회의-----
-----.

1. ~ 2. (현행과 같음)

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시행 또는 승인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별표와 같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된 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

----- 별표와 같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된 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4. 삭제

제29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현행과 같음)

② ----- 어느

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3. (생략)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⑥ ~ ⑦ (생략)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 전임위원의 -----.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⑦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경관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3. 13.>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심의 결과를 15일 이내에 해당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관법 시행령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경관사업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경관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
2.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경관계획
3. 주변지역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주변지역 경관과의 조화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 나.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업
- 2.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 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 3.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심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이하 이 호에서 “기본설계”라 한다)를 완료하기 전에 마칠 것. 다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관위원회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 2. 사회기반시설 사업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 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사업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 다.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의 경우: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 ③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발주청에 설치된 기존 위원회에서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도시·조경·환경 등 경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하며, 3명 이상이 경관 심의에 참여하도록 할 것
 - 2.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경우
 - 가.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것. 이 경우 2)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 되어야 한다.

1) 발주청에서 경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가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 중 “경관위원회”는 “발주청에서 구성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로, 제25조제4항 중 “제2항제3호”는 “가목2)”로 본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개 정 안	검 토 의 건	
	수정안	검토사유